9 강사수당 등 지급 부적정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(세출예산 집행 기준) [별표2]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심사수당은 법령·조례,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
- 또한,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예산이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·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2시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기본 1시간 80,000원, 초과 시 50,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80,000원으로 집행

사례2>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심의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

사례3> 서면심의를 실시하면서 심사수당을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책정하여 집행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○ 강사수당 등 지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단가 책정 및 지급기준을 준수할 것